

# 전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수 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협조 요청

1. 입주기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21.05.24.~06.13.)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사들께서는 방역지침 준수 및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협조요청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전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장



수신처 : (주)케이씨씨글라스 전의공장, (주)제뉴원사이언스, 월드웨이(주), (주)나우코스, 한국바이오펩제약(주),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주)디엔, 명승식품(유), (주)이오나노켐, (주)에치엔지, (주)에이피씨티, (주)원익미트리얼즈, 제일플라텍스산업, (주)상원켐, (주)이원켐텍, (주)코스모텍, 한국NOF메탈코팅스(주), 주일산업, 제일풀리캠(주), 한국신문잉크(주), 글로벌피엔에프(주), 수광티티아이(주)(세종지점), (주)제이에스테크, (주)원창기업, (주)대동세라믹, 중앙물류서비스(주), (주)포스코케미칼, (주)다스코, (주)유상, (주)레이크머티리얼즈, (주)오스템, (주)삼일무역, (주)신우테크, 산들본가, 한국콜마(주) 관정공장, C.A페이퍼(주), 에어리퀴드어드밴스드머티어리얼즈(주), (주)금와이엔씨, (주)에스제이파워, 대보산업(주), 콜마비엔에이치(주), 성인

담당자      과장 함성욱      관리사무소장      윤석기      협의회장      김택환  
협조자      주임 최정연

시행      전의산단 21-286      (2021.05.28.)      집수      ( )

우 3000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10 / <http://www.jeonuisandan.co.kr/>

전화 044)868-8650      팩스 044)868-8651 / nomnium9@naver.com / 공개



## 세종특별자치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협조요청

1.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과-3210(2021.5.22.)호와 관련됩니다.
2.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각 사업장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을 숙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바라며
4. 아울러, 사업장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기간 : 2021.5.24.(월) 0시 ~ 2021.6.13.(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외 지역(13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개편안 시범 적용지역 외),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의무화 조치 1부.

3. (210521)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세종특별자치시장

수신자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전의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조치원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강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노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응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책임건설사업관리단

주무관 신현정 산단관리담당 강장호 산업입지과장 배원근  
전결 2021. 5. 25.

협조자 주무관 박태순 주무관 오채원

시행 산업입지과-4720 접수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2층, 산업입지과 (보람동) / <http://www.sejong.go.kr>

전화번호 044-300-4642 팩스번호 044-300-4619 / [shinhj5@korea.kr](mailto:shinhj5@korea.kr) / 대국민 공개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80(2021.4.9.)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894(2021.4.30.)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5.21.)
-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각 부서에서는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시설(자유업, 유사(업무)시설 포함 등)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 현장점검,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 시설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적극검토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미적용 지역에 한함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외 지역(13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개편안 시범 적용지역 외),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 클럽, 품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 $300\text{m}^2$  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 :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붙임4 :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5) 종교시설

- 대상시설 : 종교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5 :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6) 기타시설

- 대상시설 :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6 :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 시설(체육 시설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지방자치단체 핀딘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11)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 지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 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타 업종과의 방역 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 업종의 방역 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부서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수신자 노, 도, 로, 모, 보, 산하기관(공사, 공단, 재단), 소

주무관

황혜림

감염병대응담

당

장이지

감염병관리과 전결 2021. 5. 22.

과장

이상호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210 (2021. 5. 22.) 접수 산업입지과-4663 (2021. 5. 24.)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층,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 / <http://www.sejong.go.kr>

전화번호 044-300-6813 팩스번호 044-300-6819 / [hwang131@korea.kr](mailto:hwang131@korea.kr) / 비공개(5)